

법령코너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 개정(안) 입안

○ 입안예고 취지

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규격(IEC) 수준으로 개편한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국제규격 체제 전환에 따른 전기용품의 기술개발 및 무역촉진을 도모하고 자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 개정(안) 입안예고(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-1호, 2003.13)를 실시함

-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03.1. 30일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(TEL : 02-509-7411/3, FAX : 02-507-6875)에 제출
- 안전기준 전문에 대하여는 제품안전과에서 열람 가능

○ 강제적용 안전기준 추가 품목 (6개 기준)

-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커패시터, 제2-3부 IPX0급 초과외의 보호등급을 갖는 기기용커패시터 (K 60320-2-3)
- 램프부속품, 방전등용안정기(형광램프 제외)의 성능 요구사항(K 60923)
- 램프제어장치, 제2-1부 : 시동장치(글로우스타터 제외)에 대한 개별요구사항(K 61347-2-1)
- 램프제어장치, 제2-8부 : 형광램프용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(K 61347-2-8)
- 램프제어장치, 제2-10부 : 고주파 냉음극방전관(네온관)용 전자식안버터 및 컨버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(K 61347-2-10)
-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, 제2부 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(K 70000)

